

2013년 독일 언론보도 관련 불만 현황과 주요 내용



글. 김세환
독일 만하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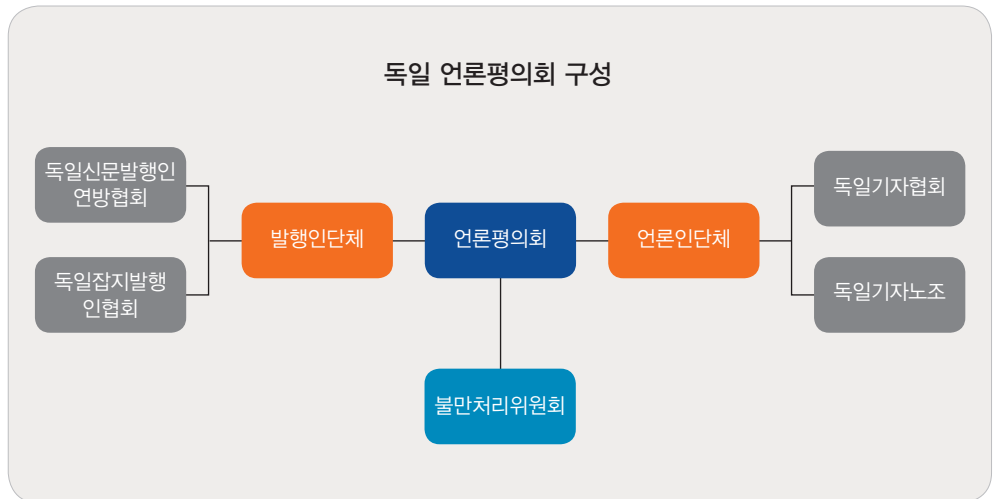


독일의 언론평의회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기본적으로 독일 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의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법정기구는 아니지만, 독일 언론평의회 업무 중 하나인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률 「독일 언론평의회에 의해 설치된 불만처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법률」¹⁾로서 그 권한과 기능을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언론보도 관련 불만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론평의회를 살펴봐야 한다.

1) 독일 언론평의회에 의해 설치된 불만처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법률 (Gesetz zur Gewährleistung der Unabhängigkeit des vom Deutschen Presserat eingesetzten Beschwerdeausschusses)

독일 언론평의회의 구성과 업무

언론평의회는 각각 2개의 발행인단체와 언론인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행인단체는 독일신문발행인연방협회(Bundesverband Deutscher Zeitungsverleger/BDZV)와 독일잡지발행인협회(Verband Deutscher Zeitschriftenverleger/VDZ)이며, 언론인단체는 독일기자협회(Deutscher Journalisten-Verband/DJV)와 독일기자노조(Deutscher Journalistinnen- und Journalisten-Union/DJU)이다. 4개 단체는 각각 2인의 대의원을 언론평의회에 파견하며, 이들 대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언론평의회의 재정, 인사, 조직 업무를 수행한다. 대의원을 구성하는 4개 단체는 28인으로 구성된 언론평의회 총회를 위한 대표자도 파견한다. 매년 2회에 걸쳐 개최되는 언론평의회 총회는 언론규약(Pressekodex)과 관련된 보도윤리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인쇄매체와 온라인매체를 포함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한 불만은 언론평의회 산하 불만처리위원회(Beschwerdeausschuss)에서 담당한다. 불만처리위원회는 매년 4회 개최되며, 보도내용에 대한 불만을 언론규약에 따라 평가한다. 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발행인 대표자와 기자들이 각각 동수로 구성된다. 이외에 언론평의회와 산하 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언론평의회는 두 개의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대의원을 파견하는 4개 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불만처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연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참고로 2010년 이후, 독일연방정부의 보조금은 223,000유로이다.

2013년 불만접수 및 처리 현황

2013년도 언론평의회에 접수된 불만건수는 총 1,347건이었다. 2012년의 1,500건에 비해 약 10%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2013년에 접수된 ‘집단불만(Sammelbeschwerden)’²⁾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129건).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단일 보도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대형 이슈에 대한 집단 불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난 7년간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2010년(1,661건)에는 ‘러브퍼레이드(Loveparade)’참사³⁾에 대한 불만이 245건, 잡지 티타닉(Titanic)의



테크노음악축제에서 발생한 군중압사 사건인 러브퍼레이드 사고 당시 모습(출처 : 프라이에프레쎬(Freie Presse), 「Staatsanwaltschaft will strafprozess nach Loveparade-Katastrophe, 2014년 2월 11일자

테크노음악축제에서 발생한 군중압사 사건인 러브퍼레이드 사고 당시 모습(출처 : 슈베비쉬짜이퉁(Schwäbisch Zeitung), 「Schwere Polizeifehler bei Loveparade, 2011년 5월 1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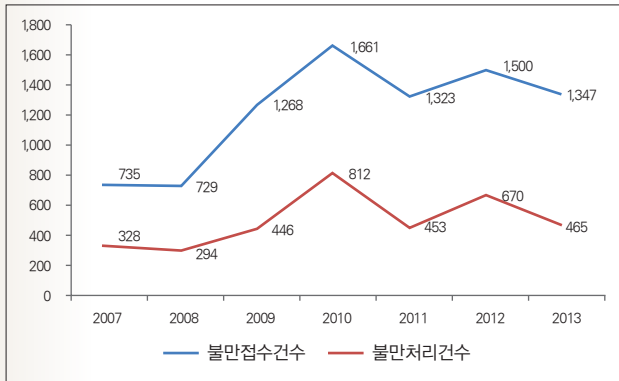
문제가 된 TITANIC의 가톨릭교 비하 사진(출처 : <좌>티타닉(TITANIC), 「Kirche heute, 2010년 4월호, <우>티타닉(TITANIC), 「Die undichte Stelle ist gefunden, 2012년 6월호)

2) 언론평의회는 최소 5인 이상의 독자가 출판물의 동일 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때 이것을 집단불만으로 일컫는다.
3) 뒤스부르크(Duisburg)에서 개최된 테크노음악축제에서 발생한 군중압사 사건

‘지금의 교회(Kirche Heute)⁴⁾’에 대한 불만이 200건 제기되면서 급증하였다. 또한 2012년(1,500건)에도 티타닉의 교황 표지사진에 대한 불만이 180건, 일간지 빌트(Bild)의 ‘포스트폰바그너(Post Von Wagner)’ 칼럼에 70건⁵⁾의 불만이 제기되어 전체 불만건수의 증가를 이끌었다.

2013년 언론평의회에 접수된 1,347건의 불만 중 318건은 단순처리(Vereinfachtes Verfahren)로

2013년 언론평의회에 접수된 불만접수 및 처리 현황⁶⁾



결정되었다. 단순처리는 불만접수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방송프로그램 혹은 광고내용에 대한 불만들로서 이것들은 언론평의회 소관이 아니다. 나머지 1,029건의 불만은 정식절차로 처리되었으며, 언론규약과 관련된 심사에서 집단불만을 1회로 처리할 경우 910건이 해당한다. 그리고 정식절차에 의해 처리된 910건의 불만 중 465건이 불만처리위원회로 이첩되었으며, 나머지 445건은 사전심사(Vorfahren)에서 ‘이유없음(unbegründet)’으로 판단되었다. ‘이유없음’ 판단은 보도내용

과 편집이 불공정했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의미로서, 언론평의회는 이러한 평가에 불만을 제기한 독자와 불만의 대상이 된 매체에 서면으로 공지하였다.

2013년도 불만처리건수는 불만접수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집단불만 제기가 많았던 2010년(812건)과 2012년(670건)에 불만 처리 건수도 증가하였으며, 지난 7년간 추이를 살펴볼 때,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불만접수와 이에 따른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제재 현황

2013년 언론평의회 산하 불만처리위원회로 이첩된 465건 가운데 239건이 접수된 불만에 대해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고, 226건에 대해서는 ‘이유있음(begründet)’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불만처리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이 가운데 총 191건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다. 참고로 제재 순위는 일반적으로 언론규약 침해의 심각성, 관련자의 중요도, 그리고 편집을 통해 가능한 보상수

4) 당시 가톨릭 교회의 성추문을 조롱하고자 잡지 표지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성직자의 구강성교를 느끼는 것으로 묘사한 그림을 게재하여 파문이 발생함.

5) 동성부부에 대한 비판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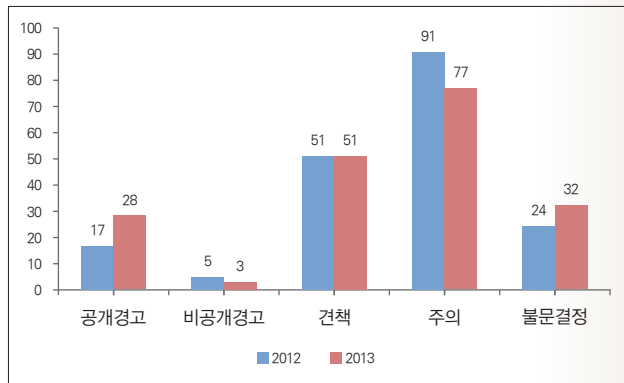
6) Deutscher Presserrat (2014), Jahresbericht 2012/2013, P.6

준(수정, 사과 등) 등에 따라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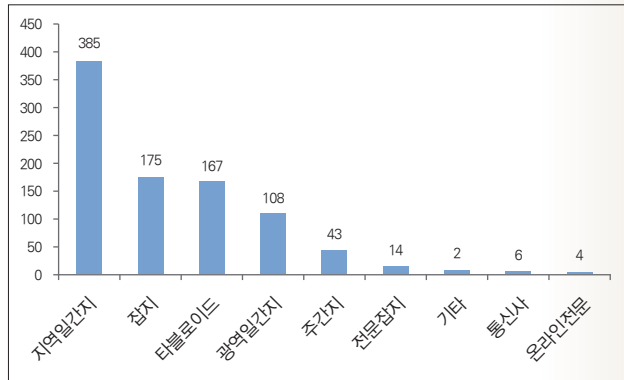
2013년도 제재 결정을 살펴보면, 가장 강력한 제재인 ‘경고(Rüge)’⁷⁾가 총 31건이었다. 경고는 다시 ‘공개경고(öffentliche Rüge)’와 ‘비공개경고(nicht-öffentliche Rüge)’로 나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3년에는 28건의 공개경고와 3건의 비공개경고가 결정되었다. 2013년의 경고 수치는 2012년의 22건, 2011년의 20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이고,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0년의 40건에 비해서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외에 불만처리위원회는 51건에 대해 ‘견책(Missbilligung)’⁸⁾, 77건에 대해 ‘주의(Hinweis)’⁹⁾, 32건에 대해서는 접수된 불만에 대해 이유는 존재하나 제재는 면제하는 ‘불문결정’¹⁰⁾을 내렸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경미한 제재인 ‘주의’는 줄어든 반면, 강력한 제재인 ‘공개경고’는 대폭 증가하였다. 이것은 언론평의회가 언론규약 침해 여부를 위중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에 가장 많은 불만이 제기된 매체는 지역일간지로서, 총 910건 중 42%에 해당하는 385건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뒤이어 인쇄 잡지가 175건, 타블로이드신문이 167건, 광역일간지가 108건, 주간지가 43건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반면 불만을 제기한 쪽을 살펴보면, 735명의 개인이 언론보도에 불만을 제기하며 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정당, 협회, 기구와 같은 이익집단에서 총 175건(19%)의 불만을 제기하였다. 2013년 이익집단의 불만제기는 8%에 머물렀던 전년

언론보도 불만 관련 제재 현황 ¹¹⁾



매체별 불만제기건수 ¹²⁾



7) 언론평의회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인쇄매체는 언론평의회 결정을 반드시 지면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공개경고와 달리 비공개경고는 접수된 불만이 언론규약을 심각하게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경고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8) 언론규약의 심각한 위반이 지적되지만, 불만처리위원회 규칙 15항에 의거하여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15항(경고공개 의무).

Verpflichtung zur Rügenveröffentlichung)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언론기관은 언론규약 16항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위원회의 경고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련자 보호가 요구될 때에는 불만처리위원회가 공개의무를 면해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9) 언론규약의 미약한 위반이 지적되며, 제재 결정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10) 불문결정은 보도편집이 언론규약 침해사항에 대해 공정하게 대응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Deutscher Presserat (2014), Jahresbericht 2012/2013, P.9; P.24.

12) Deutscher Presserat (2014), Jahresbericht 2012/2013, P.9

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9명의 독자가 교황 선출에 대한 일간지 타게스짜이퉁(Tageszeitung)의 기사를 비판하였다. 해당 기사는 기사 헤드라인¹³⁾ 관련 신중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상이한 헤드라인으로 편집된 동일 기사의 온라인 칼럼에 대해서는 불만이 제기되지 않았다. 또한, 유명인에 대한 풍자와 조롱으로 유명한 잡지 티타닉의 우편엽서에 대해서 17편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사후 피임약을 둘러싼 가톨릭교회 내 논쟁에 대한 것이다. 주간지 스텐(Stern)의 안경업자 관련 기사에도 23건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높은 가격과 불충분한 구매 상담을 비판한 것으로, 언론평의회는 사전 심사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다. 언론평의회는 해당 잡지가 심층취재 결과(높은 가격, 불투명성, 부족한 고객 응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전자담배에 대한 빌트(Bild) 보도에 대해서도 9건의 불만이 제기되었는데, 해당기사는 저널리즘의 신중의무 측면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다.

이른바 ‘황색저널리즘’으로 지칭되는 타블로이드 신문과 잡지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언론평의회는 2013년에 결정한 31건의 경고 중 5건을 타블로이드 언

론에 부과하였다. 해당 매체들은 유명인의 사생활을 주로 보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실보도 명령(언론규약 1항)¹⁴⁾과 신중보도 의무(언론규약 2항)¹⁵⁾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테니스 스타 ‘스테피 그라프(Steffi Graf)’의 정신상태 관련 보도,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비밀이혼 보도, 독일 전통음악가 ‘스테판 모로스



타게스짜이퉁의 교황 비판 헤드라인(출처: Tageszeitung, 「Junta-Kumpel löst Hitlerjunge ab」, 2013년 3월 15일자)

13) “Junta-Kumpel löst Hitlerjunge ab”

14) Pressekodex Ziffer 1(Wahrhaftigkeit und Actung der Menschenwürde): ‘Die Achtung vor der Wahrheit, die Wahrung der Menschenwürde und die wahrhaftige Unterrichtung der Öffentlichkeit sind oberste Gebote der Presse. Jede in der Presse tätige Person wahr auf dieser Grundlage das Ansehen und die Glaubwürdigkeit der Medien.

15) Pressekodex Ziffer 2(Sorgfalt): Recherche ist unverzichtbares Instrument journalistischer Sorgfalt. Zur Veröffentlichung bestimmte Informationen in Wort, Bild und Grafik sind mit der nach den Umständen gebotenen Sorgfalt auf ihren Wahrheitsgehalt zu prüfen und wahrheitsgetreu wiederzugeben. Ihr Sinn darf durch Bearbeitung, Überschrift oder Bildbeschriftung weder entstellt noch verfälscht werden. Unbestätigte Meldungen, Gerüchte und Vermutungen sind als solche erkennbar zu machen. Symbolfotos müssen als solche kenntlich sein oder erkennbar gemacht wer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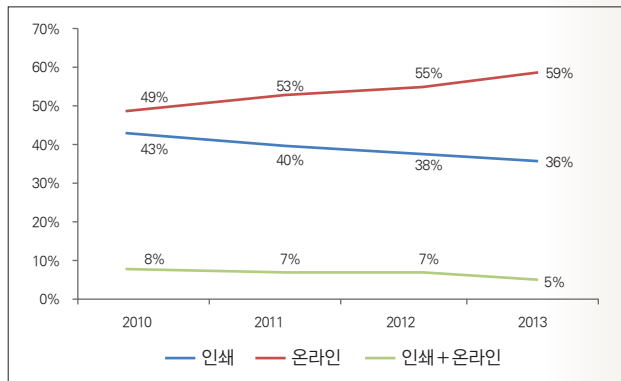
(Stefan Mross)’의 음주 문제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태의 유명한 기사는 공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일정부분 용인되었지만, 2013년 언론평의회는 신중보도의무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였다. 참고로 타블로이드 매체에 대한 제재는 5건의 ‘경고’ 이외에 5건의 ‘견책’도 결정되었다.



타블로이드 매체 문제 기사들(좌: 스테피 그라프(Steffi Graf),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우: 스테판 므로스(Stefan Mross)) (출처 : <좌> 프로미벨트(Promiwelt), 「Ihr Absturz in die Lebenskrise」, 2013년 4/5월호, <가운데> 마이네프라이짜이트(Meine Freizeit), 「Verheimlichte Scheidungstragödie」, 2013년 5월호, <우> 프라우악투엘레(Frau Aktuelle), 「Pikante Enthüllung」, 2013년 4월호)

인쇄기사와 온라인기사의 불만을 비교해보면, 온라인기사에 대한 불만은 총 534건이 제기되어, 정식절차에 의해 처리된 910건의 불만 중 59%를 차지하였다. 반면 인쇄기사에 대한 불만은 총 331건이 제기되었고, 온라인기사와 인쇄기사의 동일 보도에 대해서는 총 45건이 제기되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인쇄기사에 대한 불만은 2010년 43%에서 2013년 36%로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지만, 온라인기사에 대한 불만은 2010년 49%에서 2013년 59%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지면을 발행하는 매체보다 인터넷 기반의 보도가 더 적극적이고 선동적이다. 또한, 동일 언론사일 지라도 인쇄기사의 경우 지면의 한계로 편집의 ‘필터링’ 기능이 중요하게 작동하지만,

인쇄기사와 온라인기사에 제기된 불만 현황 16)



16) Deutscher Presserat (2014), Jahresbericht 2012/2013, P.10

온라인에서는 지면에 실리지 못한 자사 취재기사, 온라인취재팀의 수집기사, 다양한 이해집단의 보도자료 등이 여과 없이 자사 사이트에 게재된다. 이러한 점에서 온라인 보도가 언론규약을 침해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온라인에 게재되었어도, 지면에 동시에 게재된 기사에 대한 불만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큰 변화 없이 소폭 하락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독일의 보도 불만 이슈 및 정책 동향

2013년에 발생한 언론보도의 불만처리 관련 핵심 이슈와 정책을 소개하면 첫째, 위에서 언급한 교회/종교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극우주의 테러집단을 둘러싼 이슈에서도 여러 시사점이 나타났다. 2011년 독일 소도시 ‘쯔빅카우(Zwickau)’에서 극우조직 NSU¹⁷⁾의 주택가 폭발테러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3년 5월에는 해당 테러의 핵심용의자로 조직원 ‘베아테 체페(Beate Zschäpe)’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시작 후 극우주의와 테러리즘과 관련된 보도·분석·논평이 증가하였고, 이에 발맞춰 언론평의회에 ‘NSA’, ‘Zwickauer Zelle(쯔빅카우 지역 세포조직)’, ‘Beate Zschäpe’, ‘극우테러(Rechtterrorismus)’ 등의 어휘가 포함된 기사에 대한 불만이 빈번하게 접수되

었다. 재판 시작 전 언론평의회에 극우주의자들의 연쇄 살인 보도에 대한 17건의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재판이 진행되자 10건의 불만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NSU 재판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평의회는 유의미한 두 가지 판단을 내렸다. 보도내용 측면에서, 재판 중인 용의자와 관련하여 언론에 허용된 표현 수위에 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용의자 ‘베아테 체페’에 대한 일간지 빌트의 기사 헤드라인 “악마가 아름다워졌다(Der Teufel hat sich schick gemacht)”에 대해 일부 불만처리위원회 위원들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해당 기사에서 그녀는 ‘나치테러리스트(Nazi-Terroristin)’로 표현되었는데, 언론규약 13항¹⁸⁾에 의거하여 언론평의회는 ‘나치테러리스트’라는 어휘가 선입견에 입각한 표현인지에 대해 판단해야만 했다. 결론적으로 불



재판중인 용의자 ‘베아트 체페’의 사진을 공개한 일간지 빌트의 기사 헤드라인 (출처 : 빌트(Bild), 「Der Teufel hat sich schick gemacht」, 2013년 5월 7일자)

17) 국가사회주의지하조직(Nationalsozialistischer Untergrund)의 약칭으로, 나치즘을 신봉하는 인종주의적 극우 세력.

18) Pressekodex Ziffer 13(Unschuldvermutung): Die Berichterstattung über Ermittlungsverfahren, Strafverfahren und sonstige förmliche Verfahren muss frei von Vorurteilen erfolgen. Der Grundsatz der Unschuldvermutung gilt auch für die Presse.

만처리위원회는 ‘이유없음’으로 기각하였는데, 당시까지 조사에 따르면 테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라는 표현은 언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악마(Teufel)’라는 어휘도 원고 측 입장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 내용의 공개와 관련된 부분도 있다. 지역일간지 <함부르거아벤트블라트(Hamburger Abendblatt)>는 NSU 재판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경찰의 직책과 이름이 공개되었다. 불만처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언론규약 8항¹⁹⁾에 의거하여, 재판 중인 증인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견책’ 제재를 결정하였다. 언론평의회는 신분이 공개된 증인은 실질적 위험에 종종 빠지게 되고, 이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분명히 하였다. 또한, 증인이 경찰이라고 해서, 언론규약 상 증인비공개 규정이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NSU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언론사 자리 배정 논란은 독일 사법기구와 관련된 언론활동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었다. 해당 재판의 취재를 위해 테러희생자 출신국민인 터키 언론들이 대규모로 방청을 신청하였고, 이에 한정된 방청석을 고려하여 언론사별 추첨이 이루어졌다. 이 결과 독일 주요 언론사들의 방청이 제한되면서, 법정 내 취재와 중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현재 독일법원은 법원조직법(GVG) 제169항에 따라, 재판 내용의 공적 공개 및 상영을 목적으로 한 시청각적 녹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평의회는 인터넷 시대에 구시대적 금지규정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언론평의회는 범죄자에 대한 성급한 보도로 이른바 ‘낙인효과’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시대적 흐름과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에 대해 시청각 녹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이 제한된 방청석 배정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재판을 동영상 중계하거나, 법정 내 노트북을 이용한 취재 허용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둘째, 언론평의회는 인권보호를 위해 언론규약을 개정하였다. 특히 범죄자와 피해 보도에 대한 윤리 규칙이 개정되었다. 2013년 5월 13일 총회에서 보도의 신중한 접근을 위해 언론규약 8항²⁰⁾(인격 보호)이 새롭게 의결되었다. 8항의 개정 목적은 인권 보호를 위해 언론인들이 쉽게 활

19) 재판 증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다.

20) Pressekodex Ziffer 8(Schutz der Persönlichkeit): Die Presse achtet das Privatleben des Menschen und sein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st aber sein Verhalten von öffentlichem Interesse, so kann es in der Press erörtert werden. Bei einer identifizierenden Berichterstattung muss das Informationsinteresse der Öffentlichkeit die schutzwürdigen Interessen von Betroffenen überwiegen; bloß Sensationsinteressen rechtfertigen keine identifizierende Berichterstattung. Soweit eine Anonymisierung geboten ist, muss sie wirksam sein. Die Presse gewährleistet den redaktionellen Datenschutz.

용할 수 있는 취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편집진과 발행인들은 범죄보도에서 구체적 기준이 확립되기를 희망하였다. 즉, '언제 범죄자를 공개할 것인가?', '범행 수법과 재판 과정에 대한 보도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유명인에 대한 보도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론규약을 바라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언론규약 8항은 피해와 범죄자에 대한 보도윤리를 분리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범죄보도에서 향후 공공의 알 권리와 범죄자의 인격권을 동등하게 둔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특정 사건의 용의자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범죄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언론평의회는 개정된 언론규약 8항이 본래의 의도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입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언론은 범죄 관련 당사자를 언제 보도해야 하는지 구체적 사례로 확인해야 하는데 가령, 범죄수법이 특별 혹은 심각하거나, 이미 대다수 대중이 해당 범죄를 인지하고 있을 때이다. 이에 덧붙여 언론규약은 범죄보도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도 담고 있는데 범행고의성의 정도, 범죄에 대한 비난과 심각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언론평의회는 피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도가 언론 윤리 차원에서 확인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번 언론규약 8항의 개정은 독일 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 보호와 같은 가치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취재 및 편집 과정에 대한 유용하고 분명한 윤리기준을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사고 사진과 광고를 연계한 편집과 관련된 부분이다. 두 명의 여성이 사망한 심각한 교통사고 사진이 온라인매체에 노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사진은 생명보험 광고와 같이 게재되었다. 이에 대해 한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기 힘들고, 편집이 매우 악의적이라 비판하며 불만을 제기하였다. 해당 매체는 광고가 편집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광고 관련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실제로 광고를 게재한 보험과 해당 사고의 연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편집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매체는 독자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이해를 구했으며, 향후 이러한 형태의 연계를 피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언론평의회도 이번 사안이 언론규약 1항, 특히 사고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존엄성을 훼손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러한 행태를 피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넷째, 언론평의회는 EU위원회가 설치한 자문그룹 <미디어 자유와 다양성에 대한 고위급 그룹(High Level Group on Media Freedom and Pluralism)>의 권고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해당 권고는 2012년 말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EU차원에서 제안되었으며, 자문그룹은 역내 회원국들에게 독립적 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독립적이라는 것은 미디어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반박 기사를 게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자문그룹은 보도 분야에서 예상되는 점진적 질적 하락을 피하기 위해 역내 회원국의 모든 언론이 행동지침과 편집가이드라인을 공표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평의회는 자문그룹이 제기한 이른바 ‘공동규제(Co-Regulierung)’보다 독일에서 수십 년 동안 작동해온 자율통제기구가 기능적으로 더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반박하였다. 현재 독일에서 작동하고 있는 언론규약 상의 근거들, 즉 저널리즘에 업무윤리 규정을 부과하고, 보도 관련 불만을 심사하며, 언론인의 자율의무에 근거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자유와 언론의 질적 향상을 보장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EU차원에서 국가별 현황을 감시하는 것은 미디어 자유를 감소시키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언론평의회는 EU 역내 일부 회원국의 언론 현황을 외면한 것으로, EU에서 가장 큰 언론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독일이 언론자유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권고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언론평의회는 ‘성전환자 관련 보도’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2013년 여러 성전환자 관련 단체들과 개인들이 약 70건의 불만을 언론평의회에 제기하였다. 제기된 불만의 핵심적 내용은 언론보도의 성전환자 관련 표현에 있는데, 예를 들어 ‘남성에서 여성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원래 남성/여성인’, ‘남자로 태어났지만’, ‘생물학적 성변화’ 등이다. 불만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혐오감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성전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오직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였다.

언론평의회는 해당 불만을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였으며, 모든 사안을 개별적이면서 신중하게 처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불만이 사전심사에서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고, 단지 3건이 불만처리위원회로 이첩되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2건은 ‘이유있음’으로 결정되었고, ‘이유있음’으로 판결된 사례 역시 제재는 면제되었다.²¹⁾ 참고로 2009년에는 약 50건, 2010년에는 15건의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자율규제로 해당 문제를 다루었다.

언론평의회는 언론이 ‘성전환’ 주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하기를 주문하였다. 또한, 언론이 특정 개인을 묘사하거나, 특정 어휘를 이용할 때 신중해야 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피하고자 성전환자들이 스스로를 묘사하거나, 지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조언하였다. 나아가 인간적으로 힘겨운 상황에 놓여있는 성전환자들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며, 잘못된 어휘나 개념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주문하였다.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기자들에게 성전환 관련 단체와 상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결론적으로 성전환 관련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거나, 보도 관련 어휘를 인정하는 것이 언론평의회는 임무는 아니지만, 성전환 주제에 대한 불만제기

21) 성전환 여성에 대한 범죄보도에서 피해자를 여성 옷을 입은 남성으로 표현함.

는 언론 윤리적 측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언론평의회는 옴부즈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옴부즈맨 제도는 영미권과 스칸디나비아 지역 국가들에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독일에서는 그 역할과 기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12년 옴부즈맨을 운영하는 언론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이들은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언론규약에 입각한 보도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언론평의회는 옴부즈맨을 여론과 언론의 중요한 중재자로 간주하면서, 2013년 이들 단체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였다.

독일 언론계에서 옴부즈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족하다. 가령 어떤 옴부즈맨은 전문가이고, 다른 옴부즈맨은 외부인이지만, 또 다른 옴부즈맨은 매체의 편집진이기도 하다. 많은 옴부즈맨이 핵심 편집진과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옴부즈맨의 개입이 언론자유와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언론평의회와 공적 업무를 대신하지는 못하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언론평의회는 옴부즈맨이 저널리즘에 대한 일상적 감시를 구축함으로써 언론평의회와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2013년은 언론평의회와 이러한 시각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시기였다.

2013년 독일 언론평의회가 판단한 사안을 종합해보면 종교, 나치즘, 범죄, 섹스와 같은 사회적으로 휘발성이 강한 이슈들을 언론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언론자유와 의견표명의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지 고찰하고 있다. 2013년 독일 언론보도의 불만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합의가 우리의 언론중재 정책에 유의미하게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